

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	처리기간 14일
신청인	제작자명		
	자동차제작자등록번호		
	대표자명		
자동차	차명	차종	
내압 용기	설치 위치	형식	
	사용 압력	용적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압용기 기술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성능시험대행자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내압용기 연료장치 개요에 관한 도면 2. 내압용기 장착에 관한 도면 3. 내압용기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. 그 밖에 내압용기 및 그 가스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	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
처리절차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 성능시험대행자	→ 검토 성능시험대행자
	→ 결재 성능시험대행자	→ 결과서 발급 성능시험대행자